

研究論文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의 세부 항목 변천의 실증분석

대일 8항목 요구 제5항의 해부

장박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후 한일외교사 전공
bakjin822@hanmail.net

I. 머리말

II. '8항목 제5항' 형성의 주된 흐름

III. 세부 항목 분석

IV. 맺음말

I. 머리말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 관한 주된 연구에서도 대일 8항목 요구 중 세부 항목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¹⁾ 그러나 청구권 교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구 대상으로 된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한 치밀한 해부가 불가결하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식문서에 파고들어 대일 8항목 요구 중의 제5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辨濟)할 것”(이하 ‘8항목 제5항’)의 실증분석을 진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제5항은 다른 항목에 비교해도 전쟁 피해에 관한 보상 항목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청구권 교섭을 ‘피해보상’ 문제라는 각도에서 평가하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8항목 제5항’에 들어간 요소들이 언제 구성되고, 그 후 그 내역들이 어떤 연속성과 단절성을 보였는가 등을 실증적으로 밝혀나감으로써, 첫째, 청구권으로서 일본에 제기된 제5항은 세목 차원에서 배상요구 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²⁾, 둘째,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에 따라 세부 항목들이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다는 것, 셋째, 청구권 근거에 관해 한국이 의거한 것은 결국 한일회담 개시 이전에 확정된 미국과 일본의 문서였다는 것, 넷째 전쟁 피해보상 문제는 일본국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실증하고 ‘8항목 제5항’의 세부 항목 교섭에서 보이는 청구권 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³⁾

- 1)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을 통사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 처리 외교와 한일회담』(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高崎宗司, 『檢證日韓會談』(岩波書店, 1996); 太田修, 『日韓交渉: 請求權の研究』(クレイン, 2003); 吉沢文壽, 『戦後日韓關係: 國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クレイン, 2004);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논형, 2009). 또한 청구권 관련 분석으로서 최근 조선은행의 청산과정을 고찰한 정병욱 논문「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청산과정과 한일관계」, 『사학연구』, 제95호(2009), 135-176쪽처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도 있으나 이 역시 세부 항목의 변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 2) 장박진 논문「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 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1호(2008), 209-241쪽은 ‘총액’, ‘해결방법’이라는 각도에서 ‘배상’, ‘청구권’의 연속성을 밝혔으나 거기서 세부 항목까지 들어가서 연속성을 논하지 않았다.

청구권 토의는 1951년 가을 예비회담부터 시작되었으나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청구권’으로서 항목 및 금액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제6차 회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6차 회담 토의 시 일본에 제기된 세부 항목 및 금액이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청구권 요구라고 간주하고, 그에 이르는 항목과 금액의 흐름을 고찰 범위로 삼고자 한다.

II. ‘8항목 제5항’ 형성의 주된 흐름

이하 세부 항목의 분석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8항목 제5항’을 구성한 각 세부 항목의 주된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변천은 표1과 같다.

표1-‘8항목 제5항’ 형성의 주된 흐름

『對日賠償要求調査』	제1차 회담 시 대일 8항목 요구	제6차 회담 시 제기된 제5항
제1부 현물(요구 액수 제외) 1. 지금 2. 지은 3. 서적 4. 미술품, 골동품 5. 선박 6. 지도 원판 7. 기타	제1항: 한국으로부터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 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 제2항: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책무를 변제할 것 제3항: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金員)을 반환할 것	제5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
제2부 확정채권: 17,429,362,305엔 1. 일제통화 1,514,134,098엔 2. 일본유가증권: 7,435,103,942엔 3. 상해(上海) 달러 4,000,000불 4. 보험금, 은급, 기타 미수금 6,436,617,521엔 5. 체신관계 특별계정: 2,043,506,744엔	제4항: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을 반환할 것 제5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	1. 일본유가증권 2. 일제통화 3.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4.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 관계 기타 6.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3) 세부 항목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청구권 교섭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치밀하게 고찰하기 위한 연구는 원래 하나의 글로써 모든 항목의 분석을 완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상 항목 및 요소가 많아 현실적으로 분리시켜 진행하고자 했음을 여기서 밝히는 바이다.

표1-계속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제6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 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1. 인적 피해: 565,125,241엔	제7항: 전기 제 재산 또는 청구 권에서 생(生)한 제 과실을 반환 할 것
2. 물적 피해: 11,326,022,105엔	제8항: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 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 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3. 8·15 전후 일 관리 부정행위 에 의한 손해 231,585,215엔	
제4부 일본정부의 자가 수탈에 의한 손해	
1. 강제공출에 의한 손해 1,848,880,437엔	

정리하자면 제1차 회담에서 '청구권'으로 모습을 드러낸 '8항목 제5항'은 결국 제6차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제기되었다. 그 요구 항목들과 당초 『對日賠償要求調書』에서 준비되던 항목들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 『對日賠償要求調書』 제2부: 확정채권 중의 "1. 일계통화" 및 "2. 일본유가증권"이 각각 제6차 회담 시 '8항목 제5항' 중의 "1. 일본유가증권", "2. 일계통화"로 구성되었다. 또 동 조서 "4. 보험금, 은급, 기타 미수금"이 제6차 회담에서는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 관계 기타" 및 "6.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로 나누어 요구되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對日賠償要求調書』 중의 "4. 보험금, 은급, 기타 미수금"에는 '미수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나 이는 경제거래를 통해 생긴 대일본인 채권의 문제이며, '8항목 제5항'에 있는 "3.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즉 피징용자 관련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동 "3.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과 다음 "4.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래 『對日賠償要求調書』 제2부: 확정채권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하 보듯이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중의 "1. 인적 피해"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즉, 동 항목은 단지 '청구권'만이 아니라 '배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의미에서 8항목으로 나누어진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도 동 항목은 청구권 교섭의 역사적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I. 세부 항목 분석

1. 『對日賠償要求調書』에서의 항목 구성

한국정부가 피해보상 교섭을 당초 '배상'으로 진행하고자 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를 위해 한국정부는 1949년 3월 15일 『對日賠償要求調書 第1部: 現物返還要求』, 또 9월 1일자로 제2부, 제3부, 제4부를 수록한 『對日賠償要求調書(續)』(이하 『배상조서』)를 작성했다.⁴⁾

따라서 이 글은 '8항목 제5항'의 각 세부 항목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배상 요구 시 동 항목들이 어떻게 구상되어 있었는지부터 고찰해야 한다. 동 항목에 속한 6개 항목의 내역은 이하 표2부터 표6까지와 같다. 그 가운데 제6차 회담에서 제시된 '8항목 제5항' 중 "3. 피징용자 미수금"과 "4.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보상"은 『배상조서』에서는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중 "제1관 인적 피해"로 같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합쳐서 제시하도록 한다.

(제1항: 일본유가증권)

표2-『배상조서』 중의 일본유가증권의 내역⁵⁾

세부 항목	요구액(단위: 엔)
일본정부 국채	5,836,250,485.21
일본국내 지방채	1,631,737.00
일본정부 보증사채(社債)	937,695,010.30
일본 정부기관 사채	110,353,042.63
일본 일반사채	216,476,523.00
일본 일반주식	87,150,667.30
중국, 만주 국내의 공사채 및 주식	242,637,140.00 4,000,000.00
합계	7,435,103,942.97

4) 『對日賠償要求調書』는 1954년에 다시 제1부와 제2부, 제3부, 제4부를 합쳐 한 권의 책자로 정리되었다. 필자가 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원본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원본과 1954년판은 순서, 표 및 수치의 표기방법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요구 항목 및 액수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이하 이 글에서는 『배상조서』의 검토에 관독하기 쉬운 1954년판을 사용한다.

5) 『배상조서』, 202-203쪽.

(제2항: 일계통화)

표3-『배상조서』중 일계 통화의 내역⁶⁾

세부 항목	요구액(단위: 엔)
1. 일본은행권	1,491,932,177.00
2. 민주중앙은행권	1,915,479.86
3. 대만은행권	15,963.00
4. 북지(北支)연은행권	64,289.30
5. 중지(中支)저비(儲備)권	43,506.61
6. 일본군표	23,225.00
7. 일본정부 소액지폐	20,139,453.04
8. 몽강(蒙疆)은행권	5.00
합계	1,514,134,098.81

(제3항: 피징용자 미수금 및 제4항: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보상)

표4-『배상조서』 중 피징용자 미수금 및 피해보상의 내역(단위: 엔)⁷⁾

세부 항목	요구액	비고
1. 사망자 조위금	630,015,000	12,603명, 1인당 5,000
2. 사망자 상제료	1,260,300	12,603명, 1인당 100
3. 유가족 위자료	126,030,000	12,603명, 1인당 1,000
4. 부상자 및 일반노무자 위자료	113,053,000	부상자 1인당 5,000 일반노무자 1인당 1,000
5. 부상자 부상 수당	36,105,941	-
6. 퇴직 수당 총액	51,161,838	신고액
7. 상여금 총액	5,259,640	-
8. 현금 기타 보관금	45,397,020	-
9. 미수 임금	29,308,542	-
10. 가정 송금액	81,573,560	1인당 1개월, 평균 80(신고액 평균)
11. 징용기간 연장 수당	12,960,400	1인당 1개월, 평균 400(신고액 평균)

※ 전체 피징용자 수는 105,151명이며, 이는 1946년 3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주한 미군정청 보건후생부에 등록된 것⁸⁾

6) 위 조서, 200-201쪽.

7) 위 조서, 323-324쪽.

8) 위 조서, 330쪽. 그러나 동 비교에서는 등록자가 지극히 소수라는 것과 10월 이후의 귀국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제5항: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 관계 기타)

- 은급

표5-『배상조서』 중의 은급 내역⁹⁾

남북 구별	종류	결정 상황	대상자 수	요구액(단위: 엔)
38선 이남	연금	기재정분	11,541명	69,281,700.00
		미재정분	9,535명	104,505,300.00
		합계	21,076명	173,787,000.00
	일시금	기재정분	95명	78,020.00
		미재정분	12,066명	9,851,962.00
		합계	12,161명	9,929,982.00
연금, 일시금 합계			33,237명	183,716,982.00
38선 이북	연금	기·미 재정분	14,044명	115,858,000.00
	일시금	기·미 재정분	8,107명	6,619,988.00
	연금, 일시금 합계		22,151명	122,477,988.00
남북 총합계			55,388명	306,194,970.00

- 기탁금: “법무 관계 미수금” 합계 5건(1,933,193엔) 중의 3건 621,073엔¹⁰⁾

(제6항: 한국인의 대일본 또는 법인 청구)

표6-『배상조서』 중의 보험회사 관련 청구 내역¹¹⁾

보험 종류	내역	요구액(단위: 엔)
생명보험책임 준비금	책임 준비금	400,000,000.00
	미경과 보험료	50,000,000.00
	합계	450,000,000.00
손해보험 미불 보험금	미불 보험금 지불금	7,305,468.33
	재보험 회수금	10,030,690.85
	합계	17,336,159.18
합계	467,336,159.18	

9) 위 조서, 211-212쪽.

10) 위 조서, 285-286쪽. 법무부 미수금에는 “한국인이 일본군부 또는 일본정부 기관에 기탁한 현금, 군표 및 선납한 물품 대금 등으로서 해방으로 미수된 것”이라는 해설이 있으나 그중 기탁금은 3권이며, 나머지 2권은 상품 판매 대금이다.

11) 위 조서, 204-209쪽.

2. 제1차 회담

연합국의 지위 확보에 실패한 한국은 제1차 회담에서 대일 피해보상 문제를 '대일 8항목 요구'로 제기했다. 그러나 8항목이 제기된 제1차 회담에서 '8항목 제5항'에 관해서는 제4차 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에 관한 개략적인 질의응답만 이루어졌을 뿐¹²⁾, 세부 항목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는 없었다. 따라서 제1차 회담에서 한국이 세부 항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제1차 회담 무렵 8항목 제5항의 세부 항목에 관해 한국정부가 내부적으로 보인 대응들은 일계통화, 기탁재산, 유가증권 관련 사항들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들 역시 지극히 미흡한 것에 불과했다.

첫째, 일계통화에 관해 1951년 11월 12일 국회는 그 제93차 본회의에서 1946년 2월 21일자 미군정법령 제57호에 따라 예탁한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에 대한 정당한 이익 보호를 한일회담에서 교섭하도록 결의했다.¹³⁾ 동 시기는 향후 정식 회담에서 토의할 의제 등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국회결의는 그러한 정세를 맞아 동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결의는 배상요구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 한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동 결의가 나오자 외무부는 병영태 장관 이름으로 11월 「외정1268호」로서 동 문제가 『배상조서』 제2부: 확정채권 중의 일계통화에 들어가고 있는 주제임을 지적하고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상정되기까지는 특별히 새롭게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답신했다.¹⁴⁾ 국회결의는 '청구권'에 따른 새로운 시도라기보다 『배상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긴 움직임에 불과하다.

『배상조서』에는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 이외에도 일본 지배하에서 발행된 은행권, 기타 일본정부 발행의 통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2)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2.20-4.1』, 337-339쪽; 『日韓會談第4回請求權問題委員會議事錄』(文書番號 1180, 1952), 43-60쪽째. 일본 측 문서에는 쪽수 표기가 없을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하 표기가 없을 때는 저자가 쪽수를 세고 '째'를 보충한다.

13) 「과도정부기 외화 예탁금 변제에 관한 결의안」, 제2대국회, 제11회, 제93차 본회의 회의록, 9-12쪽.

14) 「외정 1268호」,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 관계 자료, 1952』, 558-560쪽.

국회결의에 보이는 요구 범위의 한정은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에 따라 생긴 축소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원래 『배상조서』에서도 동 일계통화는 “확정채권”에 분류되어 있어, 원래 ‘배상’ 개념과 상관없는 것이었다. 또한 제1차 회담에 즈음하여 임송본 대표가 작성한 『對日會談 財産權 및 請求權 問題』¹⁵⁾에서는 일계통화가 표7과 같이 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⁶⁾ 다시 말해 청구권으로의 변화가 청구 통화의 범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표7을 세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1차 회담 무렵 일계통화에 관해 일부 변동이 일어났다. 우선 일본은행권, 만주중앙은행권, 일본정부 소액지폐의 금액이 변화했다. 그리고 청구 범위에 관해서도 『배상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리보관일계통화”¹⁷⁾라는 새로운 항목이 들어갔다.

표7-제1차 한일회담 시 임송본 대표가 정리한 한국 내 보관 일계통화의 내역

(단위: 엔)

세부 항목	요구액	『배상조서』시의 요구액
일본은행권	1,491,616,748.00 ¹⁸⁾	1,491,932,177.00
만주중앙은행권	1,462,795.41	1,915,479.86
대만은행권	15,963.00	15,963.00
연합준비은행권	64,289.30	64,289.30
저비은행권	43,506.61	43,506.61
일본군표	23,225.00	23,225.00
일본정부 소액지폐	19,800,042.90	20,139,453.04
몽강(蒙疆)은행권	5.00	5.00
대리보관일계통화	27,757,124.95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합계	1,540,783,700.17 ¹⁹⁾	1,514,134,098.81

15) 위 자료, 716-742쪽. 동 문서에는 작성 날짜 표기가 없어 정확한 날짜는 불명하다.

16) 위 자료, 730쪽. 단 원문에는 쪽수 표기가 없으므로 저자가 보충했다.

17) 이에 조선은행이 일본은행의 대리점으로서 보관한 것이 군정령 33호에 따라 군정부에 귀속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 관계 자료, 1952』, 730쪽.

18) 그 내역은 조선은행 고유분: 959,773,609.00엔과 법령57호에 의한 기탁분: 531,843,139.00엔이며, 『배상조서』에서는 후자는 같으나 전자는 “조선은행보유분 및 일본으로부터의 귀환동포에 대한 환금 및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소유분” 960,089,038.00엔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금액 차이는 포함되는 항목 차이에 따른 가능성이 있다.

19) 동 자료에서는 합계치 “1,540,783,700.17엔”이 가로선으로 지워져 있으나(『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 관계 자료, 1952』, 729쪽) 포함된 소항목들의 단순 합계는 그 수치가 맞다. 그럼에도 왜 그 수치를 지우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 동 자료에는 그 합계치의 위에 사후에 기입된 것으로 보이는 “(1,517,051,030.98엔) 소각”,

따라서 일계통화에 관해서는 제1차 회담 전후 한국 내부에서 일정한 대응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총액, 청구 범위 모두 『배상조서』 시보다 오히려 증가된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에 따라 요구 내역이 축소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탁재산에 관한 움직임이다. 『배상조서』 제5항에 포함된 기탁재산의 준비는 지극히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한일 교섭에 즈음하여 그에 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함은 충분이 예상되었다. 1951년 11월 28일 당시 주일대표부 신성모 대사는 일본에 대해 기탁재산 이관 요청을 하는 데 필요한 입증 자료 수집을 외무부에 의뢰했다.²⁰⁾ 그 의뢰 속에 담긴 항목은 다음 세 가지였다.

- 구 재일조선인연맹 및 그 산하 단체에 기탁한 증명서
- 재일한교 개인(손달원)에 기탁한 증명서
- 일본 정부 기관(세관)에 기탁한 증명서

신 대사의 의뢰에 따라 외무부는 12월 11일자로 기탁재산에 관한 입증 자료 수집을 각 도 지사에 지시하는 결정을 내리고 13일자로 그 지시를 전달했다.²¹⁾ 또한 같은 날 공보처에도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증빙 자료 수집에 관한 주지를 당부하는 추가조치를 취했다.²²⁾

그러나 제주도(2월 2일), 경기도(2월 25일), 전라북도(3월 22일), 경상북도(3월 28일), 전라남도(4월 15일), 충청북도(5월 25일), 경상남도(7월 15일)에서 돌아온 답신은 모두 다 해당 증명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다.²³⁾ 4월 29일자로 답신한 충청남도만이 김명균(일본 이름 金光隆吉)이라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5,049엔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보내온 상황이었다.²⁴⁾

이와 같은 부진한 조사결과가 나오자 외무부는 하는 수 없이 7월

또 그 아래에 "(외, 3,541,318.05엔)"라는 표기가 있다. 내용상 일계통화를 소각처분한 부분과 현물 보유 부분으로 구별한 표기로 보이는데, 동 합계치는 1,520,592,349.03엔이다. 수치를 수정하려 한 흔적은 이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20) 「한일대 제2623호」, 위 자료, 565-569쪽.

21) 위 자료, 579-582쪽. 단 원문에는 "582쪽" 표기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저자가 보충했다.

22) 「외정 1425호」, 위 자료, 578쪽.

23) 각 도 답신의 위치는 위 자료 중 제주도, 583쪽; 경기도, 584쪽; 전라북도, 588쪽; 경상북도, 589쪽; 전라남도, 596쪽; 충청북도, 599쪽; 경상남도, 603쪽. 단 원문에는 제조사 결과를 보낸 일부 도의 답신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장 쪽수는 생략했다.

24) 위 자료, 597-598쪽. 통장의 사본은 609-610쪽.

29일 주일대표부에 해당 사항이 전무임을 알렸다. 그리고 동 공문이 주일대표부와 본국 간에 오간 1952년 전반기는 바로 제1차 한일회담 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한국은 기탁재산에 관해 아무런 준비조차 안 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한 통만 확인된 우체국 저금 등 유사한 채권 소유자가 다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외무부는 동 통장을 소유한 일본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조사할 것과 동시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의 검토를 지시했다. 하나는 동 통장 소유 한국인이 직접 대표부에게 해당 금액을 청산 위탁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동 문제를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로서 다룰 방법이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비록 기탁재산이라는 한정된 범위였으나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해 각 재산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직접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구상이 한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 후의 한일회담 교섭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 반환 방법이 봉쇄된 점을 감안할 때 초기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셋째는 외채처리에 관한 움직임이었다. 당시 일본은 전후 처리 문제의 일환으로서 전전 발행한 외채의 상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와의 사이에서 1952년 여름 외채처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교섭과정에서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한국이 분리되므로 동양척식회사가 발행한 사채 상환 의무를 면제할 것을 일본이 주장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동 동양척식회사 발행의 사채는 한국정부가 청구 대상으로 준비한 일본유가증권에서는 일본정부 기관사채(社債) 항목에 들어가 있었다.²⁵⁾ 외무부는 동양척식회사가 본사를 일본에 둔 회사이며 한일회담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사를 한국에 둔 회사와 엄격히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 또 동 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천명하고 동양척식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지불 의무를 일본정부가 승계하도록 미국 측과 교섭할 것을 주미 대사에 훈령하는 등 일부 유가증권 채권 확보를 위해 대응했다.²⁶⁾ 결국 외채처리 회의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토의는 없었으며, 사채 상환 의무를 그대로 지닐지는 일본이 그 채무 계속을 인정하는가에 달리게

25) 위 자료, 733쪽.

26) 「외정 1392」, 위 자료, 674-679쪽.

되었다.²⁷⁾ 결국 동 문제도 한일 간 직접 교섭에 맡겨진 셈이었다.

제1차 회담 전후에 나타난 한국 측 '8항목 제5항'과 관련된 움직임은 이것뿐이다. 더구나 추가 조사의 흔적이 감지된 기탁재산 문제도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결과였으며, 동양척식회사 발행의 사채 문제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한 부진한 움직임과 아래에서 살펴볼 제2차 회담 시의 조회 내용이 『배상조서』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1차 회담 무렵 '8항목 제5항'의 세부 항목에 관해 『배상조서』 이상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3. 제2차 회담

제1차 회담의 실패 경험을 기초로 하여 제2차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관해 법적 근거를 추구하는 대신 우선 사실관계의 상호 조회를 진행하는 실무적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 역시 세 번에 걸쳐 일본에 대해 조회를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8항목 제5항'에 관한 내용과 『배상조서』 중의 내용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8과 같다.²⁸⁾

표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2차 회담 시 한국이 조회한 항목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된 '8항목 제5항'에 해당하는 『배상조서』 항목들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제2항 일계통화” 중 일본은행권, 군표, 일본정부 지폐 이외에 일본 지배 지역에서 발행된 은행권은 조회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 일부 차이가 있다.²⁹⁾ 그러나 총액이 제2차 회담 이후에도 늘어나고 있는 점, 제2차 회담 조회에서 같이 제외된 저비은행권이 제6차 회담에서 청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 통화가 제2차 회담

27) 이는 주일대표부 보고에서 전달되어 있다. 위 자료, 691-692쪽.

28) 한국 측 기록에는 제1차로서 4항목, 제2차로서 5항목의 제시만 기술되어 있다.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차-3차, 1953.5.11-6.15』, 1147-1150쪽. 따라서 보다 상세한 일본 측 문서 「日韓會談重要資料集」(文書番號 525, 1960), 49-52쪽에서 저자가 정리했다.

29) 기타 언급에 관해서도 조회 요구가 나오지 않았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 항목은 제5차 회담 이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가 『배상조서』의 값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식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항목으로서 굳이 이 단계에서 조회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계에서 정식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차 회담에서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던 '8항목 제5항'의 구성들에 관해 '배상'과 '청구권'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8-제2차 회담 시 한국이 조회한 '8항목 제5항' 관련 청구 내역

날짜		조회 항목	조회 내용	『배상조서』
1953. 5.14	1	한국인(법인도 포함) 소유의 일본유 가증권(공채, 사채, 주식, 기타 증권)	상환, 기타 취급방법에 관한 일본 측 의견조회	제1항: 표2
	2	한국인 피징용 노무자에 대한 제 미 불금 공탁분	상호 자료 조회	제3항 8: 표3
1953. 5.23	1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전상(戰傷)자, 전몰자 74,800명(미확정 수, 추후 명 부 제출 가능)에 대한 조위(弔慰)금 등	조치에 대한 일본 측 대책 및 의견	제3, 4항 1-5: 표4
	2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의 피징용 노 무자(1946.9.30 신고자 수 105,151명 중 징용 중 사망자 12,603명, 동 부상자 약 7,000명. 단 이상은 미확 정 수치이며 추후 명부 제출 가능)에 대한 제 미불금 및 조위금 등	조치에 대한 일본측 대 책 및 의견	제3, 4항 6-11 (8을 제외): 표4
	3	한국 내에서 교환 회수하여 SCAP 요 원 및 일본은행원 입회 아래 소각한 일본은행권 및 일본정부 지폐 대금	청산방법 및 시기에 대 한 일본 측 의견	제2항 1, 7: 표3
	4	한국인이 일본 및 일본 점령지역에 서 귀국 시 당해 지역 일본 관헌에 강제적으로 보관, 기탁시킨 일본은 행권, 일본군표, 일본정부 지폐	보관 상황 및 동 대금 청산방법 및 시기에 대 한 일본 측 전문적 의견	제5항 기탁금
1953. 5.28 (C의 부)	1	한국인 가입자에 대한 일본 19 생명 보험회사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동 미경과 보험료 개산(概算)	- 400,000,000엔 - 50,000,000엔	제6항: 표6
	2	13 손해보험회사 - 미불 보험금 - 동 13회사에 대한 조선화재해상보 험회사의 재보험회수금	- 7,305,468.33엔 - 10,030,690.83엔	제6항: 표6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5월 23일에 제시된 조회 항목 가운데 한국이 제1항목으로서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전상(戰傷)자, 전몰자 74,800명”을 따로 제시해, 제2항의 피징용 노무자와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제1항, 제2항에서 각각 '조위금'을 요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1항의 전상자, 전몰자는 제2항에 있는 노무자 이외의 존재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제1항의 전상자, 전몰자는 군인, 군속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2항목으로서 그 조위를 요청한 피징용 노무자 및 사망자 관련 인원수는 『배상조서』의 수치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실은 『배상조서』에 정리된 '피징용 피해자'에는 노무자만 포함된 것이며, 전쟁터에 동원된 군인, 군속들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 피해의 하나인 군인, 군속의 피해 문제는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권'으로서 제기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제4차 회담

실무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제2차 한일회담 역시 한국전쟁 전후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본격적인 진전 없이 휴회가 되었다. 이어 재개된 제3차 한일회담은 주지의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기간으로 결렬된 결과 청구권 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결렬된 후 약 4년 반 만에 재개된 제4차 회담은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청구권 토의가 기대된 회담이었다.³⁰⁾ 이에 따라 동 시기 한국 내부에는 청구권 문제를 재검토한 흔적이 있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대일 8항목 요구의 제2항에 해당하는 체신부 관련 문제를 풀기 위해 1958년 1월 25일자로 체신부에 '체신관계대일확정채권 상환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³¹⁾ '8항목 제5항'에 관해서도 부분적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예를 들어 제4차 회담 청구권 자료에는 1958년 2월 15일자로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임송본 대표의 의견서'라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³²⁾ 이는 제1차 회담 시 임송본 대표 이름으로 정리된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를 재수룩한 것이었다. 즉, 제4차 회담을 앞두고 당시 과거의 청구권 자료가 재검토된 것으로 추측된다.

30) 한일회담의 이러한 흐름은 장박진, 앞의 책(2009), 제6장.

31) 『제4차 한일회담(1958.4.15-1960.4.19), 청구권 관계 자료, 1958』, 708쪽.

32) 위 자료, 717-753쪽.

그러나 재검토된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임송본 대표의 의견서”의 내용은 ‘8항목 제5항’ 관련 항목에 관해 기본적으로 제1차 회담 시 작성된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8항목 제5항’의 청구 내역들이 제4차 회담에서도 그대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들을 명시하면 표9와 같다.³³⁾

표9-제4차 회담 시의 ‘8항목 제5항’의 내역

(단위: 엔)

종류	제4차 회담 시의 내역	제1차 회담 시의 내역
한국 내 보관 일계통화	1,540,783,700.17	1,540,783,700.17 (단 가로선으로 지워져 있음)
유가증권	74,321,194,605.44	74,321,194,605.44
생명보험적립금	467,336,159.00	467,336,159.00

표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4차 회담 시에 한국이 채용한 일계통화의 값은 1,540,783,700.17엔이었다. 또한 동 일계통화의 세부 항목들의 구성, 금액 모두 제1차 회담 시와 완전히 일치한다.³⁴⁾ 단 제1차 회담 시 작성된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서는 총액 1,540,783,700.17엔을 직접 가로 선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즉, 한때 동 수치는 재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4차 회담 자료에서는 그 수치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상식적으로 보고 한 때 재검토된 동 수치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유가증권 및 생명보험적립금의 수치도 제1차 회담 시의 값과 완전히 일치한다. 제4차 회담 관련 자료에는 ‘8항목 중 제5항’ 중의 기타 제3, 제4, 제5항의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사실 역시 제4차 회담의 방침이 제1차 회담 시의 내역과 사실상 전혀 차이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제4항 피징용자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 주목되는 점이 있다. 1958년 4월 17일자로 보건사회부는 강제징용자로부터 배상에 대한 요망이 많으므로 3월 31일 현재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고 있다. 그 일제조사의 규모, 방식, 기간 등에 대한 상세는 분명하지 않으나 동 조사결과 수치는 총수 287,934명, 그중 귀환자 수 266,587명, 미귀환

33) 위 자료, 732쪽에서 저자가 정리했다.

34) 통화의 내역은 위 자료, 733쪽에 수록.

자 수 13,360명, 그리고 징용 중의 사망자 수가 7,987명이었다.³⁵⁾

즉, 『배상조서』에 명시된 대상이 105,151명, 제2차 회담 시 추가된 군인, 군속 관련 인원수가 약 74,800명임을 고려하면 총수가 약 29만 명까지 증가한 것은 그 시기까지 비교적 큰 규모의 추가 파악이 이루어져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하 보듯이 제6차 회담 시 정식으로 제기된 인원수는 노무자 667,684명, 군인, 군속 356,500명, 합계 1,032,684명이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제4차 회담 전후 구체화된 대상 인원수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재개된 제4차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³⁶⁾, 그에 따라 세부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구체화되는 일 역시 없었다.

5. 제5차 회담

이승만으로부터 장면으로의 정권 교체 후 이루어지게 된 제5차 회담에서는 한일회담 사상 처음으로 제1차 회담에서 제시되던 대일 8항목 요구가 정식으로 토의되었다. 그 방침에 따라 한국은 1960년 11월 10일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을 제출하여 ‘8항목 제5항’도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제·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기되었다.³⁷⁾ 동 제목에는 제1차 회담 시의 제목과 비교해 ‘피징용 한인 미수금’의 다음에 ‘보상금’이 들어간 점이 주목되나 이것을 ‘8항목 제5항’에 새로운 추가 항목을 보충하기 위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배상조서』에서 이미 조위금 등 ‘보상’ 개념에 해당하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미 들어가 있던 항목과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의가 이루어진 제5차 회담에서는 제12차(1961년 4월 28일), 제13차(1961년 5월 10일) 소위원회에서 ‘한국법인’의 범위, ‘미수금’의

35) 위 자료, 822-825쪽.

36) 제4차 회담에서는 1958년 5월 및 12월에 각 세 차례 위원회가 열렸으나 이들 토의는 사실상 회의 진행 절차에 관한 것뿐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장박진, 앞의 책(2009), 345-347쪽.

37) 『제5차 한일예비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1-13차, 1960-61』, 12쪽; 「第5次日韓全面會談予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回會合」(文書番號 83, 1960), 7쪽째.

내용, '보상'의 개념, '일계통화'의 범위 등 '8항목 제5항'에 관한 토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³⁸⁾ 그것은 단순히 정의에 관한 질의응답에 불과하며 세부 항목이나 구체적인 요구까지 토의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제5차 회담을 앞두고 각 세부 항목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를 내부적으로 산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10과 같다.³⁹⁾

표10-제5차 회담 시 정리된 '8항목 제5항'의 내역

	금액	비고	『배상조서』의 내역
1. 일본유가증권	7,455,998,877.96엔		7,435,103,942.97엔
2. 일계통화	1,605,718,274.59엔		1,514,134,098.81엔
3. 피징용자 미수금	237,000,000.00엔 (추산)	1950.10.21자 SCAP 각서 (일본은 약 1.5억이라고 주장)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중의 제1 관 중 제6목부터 제11목까지
4.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	금액 기술은 없음	지불대상자 약 10만 명 (사망자) 전몰자 1인당 5만 엔 가족부양료 1인당 10만 엔 (부상자) 1인당 10만 엔	신고 노무자 수 105,151명(1946. 9 말 (사망자) 조위금 5,000엔 상제료 100엔 유가족 위자료 1,000엔 (기타) 부상자 5,000엔 일반노무자 1,000엔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1) 은금 306,194,910.00엔	(연금) 35,120명 289,645,000.00엔 (일시금) 20,268명 16,549,910.00엔 실제 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 로 보임(일본은 3.5억이라고 함)	(연금) 대상 인원수, 액수 동일 (일시금) 대상 인원수 동일 요구액 16,549,970.00엔
	2)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법무관계 미수금 5건 1,933,193.00엔
6. 한국인의 대일본인(법인) 청구	473,336,159.00엔	일본보험회사 33사에 대한 생명보 험책임 준비금과 손해보험 미불금 계약자 30만 명으로 추산	생명보험 19사 손해보험회사 13사 467,336,159.18.00엔

38) 각 위원회 회의록은 한국 측 『제5차 한일예비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1-13 차, 1960-61』, 340-350쪽(제12차), 365-379쪽(제13차)과 일본 측 『第5次日韓全面會談予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2回會合』(文書番號 94, 1961), 『第5次日韓全面會談予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3回會合』(文書番號 95, 1961) 참조.

39) 대한민국 정부, 『韓日會談의 諸問題』(1960), 99-103쪽에서 저자가 정리했다. 다만 동 문서의 내용은 그 서문에 있듯이 향후의 교섭 방침을 정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회담 대표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5차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8항목 제5항'에 대한 움직임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세부 항목 중 제1항 유가증권, 제2항 일계통화, 그리고 제6항 한국인의 대일본인 청구의 금액에 차이가 생겼다.⁴⁰⁾ 다만 그 금액 차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 생긴 것인지 등은 자료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또한 제6항 대상 보험회사 수가 하나 늘어나는 등 청구 범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들 변화는 기본적으로 미세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 방침 등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제3항 피징용자 미수금은 『배상조서』 이후 한 번도 독립된 청구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5차 회담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독립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요구 역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닌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4로 제시한 바와 같이 『배상조서』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중의 “제1관 인적 피해”에는 제6목: 퇴직 수당 총액 51,161,838엔, 제7목: 상여금 총액 5,259,640엔, 제8목: 현금 기타 보관금 45,397,020엔, 제9목: 미수 임금 29,308,542엔, 제10목: 가정 송금액(기본보조금, 특별보조금, 가족수당을 포함) 81,573,560엔, 제11목: 징용기간 연장 수당액 12,960,400엔, 합계 225,661,000엔이 계정되어 있었다. 개념적으로 이들은 모두 ‘피징용자 미수금’에 해당한다. 또한 총액에 관해서도 제5차 회담 시 한국이 청구 근거로 삼은 SCAP 각서 237,000,000엔(추산)과 약 1,200만가량 정도의 오차밖에 없으므로 상당히 근사하다. 결국 한국이 제5차 회담에서 ‘미수금’ 관련을 독립 항목으로 한 것은 『배상조서』에서 하나로 묶었던 징용자 관련의 ‘미수금’과 ‘보상’을 구별하기 위한 정도의 수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제4항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해 한국정부는 약 10만 명이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1946년 9월 말 조사에 따라 산출되며 그 후의 귀국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배상조서』 중의 신고 노무자 수 105,151명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1960년에 다시 정리된 대상 인원수는 제4차 한일회담 시 포착된 추가조사 결과 등이 전혀

40) 엄밀히 말하면 은급에도 '60엔'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을 '차이'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5차 회담에서도 대상 인원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사망자, 부상자 관련 위자료가 1인당 5,000엔이었던 『배상조서』에 비해 제5차 회담에서는 사망자 5만 엔, 부상자 10만 엔으로 요구액이 크게 상향 조정된 점이다.

그러나 금액 증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물론 그러한 금액 증가는 그동안 10년 이상의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 요구에 즈음하여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일본국민과 동일하게 취급 적용된 점에 비추어 최소한 전후 일본이 자국민의 전쟁 피해자에게 보상한 정도의 보상을 요구함은 당연하다”⁴¹⁾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1인당 요구 금액 산출에는 일본인 사망, 부상자들에 대한 국가보상을 염두에 둔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은 1952년 4월 29일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주권 회복 다음날인 30일에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하 ‘원호법’)을 제정하여, 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동 법에 규정된 보상액과 한국이 책정한 1인당 요구액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사망자의 경우 ‘원호법’은 사망자에 대한 조위금으로 유가족에게 기명국채 5만 엔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한국이 책정한 사망자 1인당 5만 엔은 이것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족부양료 10만 엔”이다. ‘원호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망자 유가족 선순위자 1명의 경우 그 지급 금액은 연금 1,966,800엔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책정한 “가족부양료 10만 엔”은 그것을 연금 형식으로 가정해도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적은 금액임이 분명하다.

또한 부상자 경우도 ‘원호법’에서는 12단계로 나눈 장애 정도 중 가장 가벼운 증상을 기준으로 제정 당시 그 지급액은 연간 961,000엔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책정한 1인당 10만 엔 역시 턱없이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⁴²⁾ 다시 말해 청구액에 관해서는 “전후 일본이 자국민의 전쟁

41) 대한민국 정부, 앞의 문서(1960), 101쪽.

42) 장애자 가족에게는 그 후 “전상병자 등 처에 특별급부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장애 가족에 대해서도 ‘조위’가 마련되었으나, 동 법에서도 가벼운 장애의 경우로 ‘조위금’은 15만 엔이며 더구나 동 법 제정은 1966년 7월이므로 제5차 회담 시 한국이 책정한 10만 엔과는 관련이 없다.

피해자에게 보상한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반대로 비록 1,000엔이었으나 『배상조서』에서 계정되던 일반노무자에 대한 위자료는 삭제되었다. ‘원호법’에서는 일본국민에게도 사망,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동원 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제5차 회담을 앞두고 일반노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삭제된 것은 이에 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삭제 내용에 관해서는 “자국민의 전쟁 피해자에게 보상한 정도의 보상” 수준을 충실히 준수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깊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제5항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중 사실상 기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2항으로서 “기타”로만 정리하여 제5차 회담에서도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던 점이다. 따라서 기록상 기탁재산은 『배상조서』시부터 내부적으로도 일절 그 금액이 구체화된 일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합적으로 보면 동 항목은 아래에서 보듯이 제6차 회담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 제6차 회담

주지의 김-오히라 합의로 인해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한 제6차 회담에서 피해보상 문제가 ‘청구권’으로 토의된 것은 1961년 가을부터 이듬해 초까지 개최된 제6차 회담 초기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8항목 제5항’은 제7차, 제8차 청구권소위원회 및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하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제1항: 일본유가증권

제1항 일본유가증권에 대해 한국은 최종적으로 표11과 같은 내역을 요구했다.⁴³⁾ 한국은 동 요구 제기 시 비교적 상세한 “일본유가증권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며⁴⁴⁾, 또한 그것이 현물 및 장부 조사로 인해 정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⁵⁾ 따라서 이 항목 청구에 관해서는 자료 준비가

43)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45-146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文書番號 1217, 1961), 9쪽.

44) 이 자료는 한국 측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 측 문서「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22쪽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이 직접 제출한 것인지는 불명하나 「日韓會談における韓國の對日請求8項目に關する討議記録」(文書番號 1914, 1964), 89쪽 뒤에 있는 제2표로서 범인 7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 상황에 관한 조서도 수록되어 있다.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조서』에서 작성된 세부 항목과 비교할 때 최종적으로 일본에 제기한 내역에는 항목과 금액 측면에서 일정한 변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배상조서』에 해당 항목이 있는 국채, 일본정부 보증사채, 지방채, 사채에서 금액 변동이 생겼다. 또한 구성 항목에 관해서도 『배상조서』에는 없었던 “조선식량증권 및 식량증권”, “일본저축권”, “저축 및 보국 채권”, “기타 증권” 등이 추가되었다. 반면 “일본정부 기관사채”, “중국, 만주 국내의 공사채 및 주식” 항목이 삭제되었다.⁴⁶⁾ 추가된 “기타 증권”은 구체적 내용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불투명이나 삭제된 ‘일본정부 기관사채’, ‘중국, 만주 국내의 공사채 및 주식’의 합계액이 352,990,182.63엔이며 금액상 차이가 너무 크므로 상관없는 항목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표11-제6차 회담 시의 일본유가증권 제시 내역과 『배상조서』와의 비교(단위: 엔)

세부 항목	요구액	『배상조서』 시의 요구액
일본국채	7,371,189,111.69	5,836,250,485.21
조선식량증권 및 식량증권	152,006,330.08	해당 항목이 없음
일본저축권	18,673,950.00	해당 항목이 없음
일본정부 보증사채	833,246,100.00	937,695,010.30
일본지방채	1,327,500.00	1,631,737.00
일본사채	261,941,514.00	216,476,523.00
저축 및 보국(報國)채권	4,380,027.50	해당 항목이 없음
기타 증권	92,417,791.29	해당 항목이 없음
일본주식	29,848,250.00	87,150,667.30
합계	8,765,032,574.56	7,435,103,942.97 (일본정부기관 사채, 중국·만주 국내의 공사채 주식 포함)

『배상조서』 이후는 세부 항목을 명시한 내부 자료가 없어 나머지는 총액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으나 제4차 회담 시 74,321,194,605.28엔, 제5차 회담 시 7,435,103,942.97엔이었던 총액이 『배상조서』의 금액과

45)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46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文書番號 1217, 1961), 10쪽.

46) 기타 한국은 당초 제시한 일본주식을 제6항에 포함할 것을 제8차 소위원회에서 밝히며 동향에서 뺐다.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83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14쪽제.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6차 회담 시 비교적 큰 총액 변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6차 회담 시 상당한 청구 내역에 관한 재정리 작업 등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이들 작업 내용, 수정 이유 등은 일절 불명하다.

2) 제2항: 일계통화

일계통화에 대한 요구 항목 및 금액은 표12와 같다.⁴⁷⁾ 제6차 회담 시 제기된 일계통화의 청구 내역이 과거의 내용과 비교해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2-제6차 회담 시의 일계통화 제시 내역과 제4차 회담 시의 내역의 비교(단위: 엔)

세부 항목	소각처분 및 현물 보유	금액	제4차(=제1차) 시
일본은행권	소각분	1,491,616,748	1,491,616,748.00
	현물보유분	6,442,831	
일본지폐	소각분	23,800,042.90	19,800,042.90 ⁴⁸⁾
	한국전쟁 중의 소각분	1,781,538.50	
일본군표	소각분	216,183.36	23,225.00
일본은행 소액지폐	한국전쟁 중의 소각분	218,301.65	해당 항목이 없음
중국저비은행권	소각분	1,418,056.72	43,506.61
총액		1,525,493,702.13	1,540,843,695.17

첫째, 세부 항목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제4차 회담 시와 비교해 항목 및 금액 모두 차이가 생겼다. 또한 총액에 관해서도 『배상조서』, 제4차(=제1차) 회담 그리고 제5차 회담 시의 합계와 비교해 미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배상조서』로부터 제4차 회담까지(제5차 회담 시는 통화에 관한 세부 항목이 없어 확인하지 못함) 포함되어 있던 일본 지배하의 각 지역에서 발행된 통화 중, 중지저비(中支儲備)권을 빼고 만주은행권, 대만은행권, 북지연은행권, 몽강(蒙疆)은행권들이 최종적으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적인 제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식으로 청구하는 데 GHQ, 조선은

47)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50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文書番號 1217, 1961), 16쪽.

48) 동 수치는 제1차 회담에서는 “일본정부 소액지폐”로 되어 있어 “일본은행 소액지폐”와 혼동되나,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지폐 역시 소액지폐이고 금액을 생각해서 ‘일본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 일본은행 관계자의 입회 아래 이루어진 1946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제1차 소각처리와 1947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제2차 소각처리를 증명한 1946년 4월 22일자 및 1947년 11월 14일자의 미국 문서를 제출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그 문서에는 일본은행권, 일본정부 지폐, 군표, 저비권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바로 제6차 회담 시 한국이 제기한 요구 항목들과 일치한다. 또한 저비은행권의 요구액 1,418,056.72엔은 제1차 소각 시의 1,374,550.11엔, 제2차 소각 시의 43,506.61엔의 합계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바로 이 소각 증명 서류에 의거한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배상조서』 이래 세부 항목으로 준비하던 통화의 요구 범위를 한국정부가 제6차 회담에 즈음하여 큰 폭으로 줄인 것은 실제 일본에 요구하는 데 호소력이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최종적으로 1946년, 1947년의 미국 증명 문서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은 『배상조서』 이래 준비하던 기타 통화들에 대한 법적·자료적 근거가 미약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3) 제3항: 피징용자 미수금

한국정부가 동 미수금에 대해 제시한 최종 요구액은 237,000,000엔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값은 제5차 회담을 앞두고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었다. 동 금액 제시 시 한국은 1950년 10월 21일자 SCAP 외교국 문서에 의거했음을 밝히고 있다.⁵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항목은 『배상조서』 이후 한국 내부에서조차 구체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위 SCAP 문서는 1950년 가을의 문서이므

49)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75-76쪽(제1차 소각분), 79-80쪽(제2차 소각분);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24-25쪽(제1차 소각분), 26-27쪽(제2차 소각분). 그리고 소각, 현물 보유의 명세표가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69-74쪽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한국전쟁 중의 소각분은 입회하의 소각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관련 서류 제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0)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56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文書番號 1217, 1961), 20쪽. 동 SCAP 문서는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90-91쪽에 수록되어 있다. 단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의거한 1950년 10월 21일자 SCAP 문서는 1949년 12월 21일자 일본 대장성의 점령당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었다. 대장성의 보고서는 「日韓會談における韓國の對日請求8項目に關する討議記録」(文書番號 1914, 1964), 105-110쪽에 수록.

로 1949년의 『배상조서』 작성 시는 불가능하나 한일회담 개시 후에는 파악 가능한 내용들이었음은 틀림없다. 더구나 동 문서에는 237,000,000 엔이라는 금액이 “특정한 고용 범주에 있는 한국인을 위한 보관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당자는 물론 전체 인원수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최종적으로 동 SCAP 문서에 의거해 총액만을 요구했다. 물론 해당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또한 식민지 지배하에 징용된 한국인들의 각종 미수금에 관한 자료는 통치자 일본에 있을 가능성도 컸다. 그러나 SCAP 문서가 나온 지 10년 이상 경과하는 가운데 피징용자 대부분이 귀국했으며, 제4차 회담 관련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반환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정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인원수와 해당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정부가 최종적으로 SCAP 문서의 수치에만 의거한 이유는 실패 파악의 어려움에만 기인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 조회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측면과 함께 경제건설에 자금을 쓰려던 한국정부에게는 총액 청구가 합리적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피징용자 미수금이라는 개인보상 문제를 총액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사실은 개인보상의 봉쇄가 ‘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 이전에 이미 ‘청구권’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세부 항목 교섭에서 구체화 되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제4항: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제4항 피해보상 항목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만큼 한일회담 교섭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주목되는 항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6차 회담 시 한국이 실제 제시한 요구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⁵¹⁾

51)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56쪽과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文書番號 1217, 1961), 22쪽에서 저자가 정리했다. 단 위원회 회의록에는 사망자, 부상자의 내역이 없기 때문에 「日韓會談における韓國の対日請求8項目に關する討議記録」(文書番號 1914, 1964), 112쪽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제출 자료를 참조해서 보충했다.

표13-제6차 회담 시 한국이 정식으로 청구한 제4항의 내역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1인당 보상금	청구액
생존자	648,081명	282,000명	930,081명	200불	약 186,000,000불
사망자	12,603명	65,000명	77,603명	1,650불	약 128,000,000불
부상자	7,000명	18,000명	25,000명	2,000불	50,000,000불
합계	667,684명	365,000명	1,032,684명	-	364,000,000불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제6차 회담에 이르러 대상 인원수가 약 10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제5차 회담까지 한국정부가 내부적으로 정리하던 피징용자 수는 약 10만 5000명이었으므로 약 1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물론 보건사회부가 1958년 4월 17일자로 피징용자 총수는 28만 7934명이라고 보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 내부에서 피징용자에 관한 대상 인원수가 늘어났던 흔적이 있다. 그러나 그 수와 비교해도 약 3.5배 가까운 증가가 일어났음을 감안할 때 제6차 회담 시의 인원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일본에 제시된 동 요구근거는 신고 접수 등으로 인한 독자 조사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대상 인원수 산출에 관해 일본후생성, 미국전략폭격조사 단보고 등에 의거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보상 대상자의 산출은 결국 일본, 미국 관련 기관의 조사 문서에 의거한 것이었다.⁵²⁾ 제3항과 같이 그 이유가 본인 신고 등 독자 조사로 인한 인원수 입증에 예상될 상당한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1인당 지급액이 미 달러 단위로 산출된 점이다. 그 이유는 토의과정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다. 동 항목은 엔으로 이루어진 다른 확정채권 환수 문제와 달리 '피해보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따른 청구였다. 그만큼 실제 거래된 '엔'이라는 단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를 가졌다. 따라서 국제유동성이 가장 높은 미 달러로 인한 수취를 원했던 한국정부는⁵³⁾ 바로 이 '자유도'를 이용해 미 달러 수취를 일부 실현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한국정부가 각 인원수 산출에 이용한 자료의 상세는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94-96쪽.

53) 사실 제6차 회담 시 한국정부는 미 달러로 인한 수취가 최상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적이 있다.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 2권, (V.2 최덕산-고사카(小坂) 외상회담, 1962.3.12-17)』, 49쪽.

세 번째로 1인당 요구액에 관해서도 다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제5차 회담 시 사망자 5만 엔, 부상자 10만 엔으로 늘어난 요구액은 제6차 회담에서 사망자 1,650불, 부상자 2,000불로 되었다. 그러나 동 금액 산출 역시 의문이 남는다.

한국은 요구액 제시에 즈음하여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군인, 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히면서 사망자 1,650불 및 부상자 2,000불의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⁵⁴⁾ 우선 부상자 2,000불은 ‘원호법’의 제5항중 장애연금 140불⁵⁵⁾의 35년간 지급 총액인 4,900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약 2,030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망자의 경우 부양유가족 3명(부인 및 자녀 2명), 연간 170불을 15년간(자녀가 성인되기까지의 기간) 지급할 총액 2,550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었다.⁵⁶⁾ 그러나 ‘원호법’에 규정된 제5항중의 장애연금은 제정 당시 2,514,000엔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준비한 140불 역시 전혀 이해하기 힘든 작은 금액이다. 또한 사망자의 경우 한국이 채용한 사례에서 ‘원호법’은 선순위자인 부인에게 1,966,800엔, 기타 가족 1명당 72,000엔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계 2,110,800엔이 된다. 가령 전후의 환율인 1불 360엔으로 계산해도 170불 역시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⁵⁷⁾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최종적인 피해보상 청구에서 한국이 의거한 것이 일본정부가 일본국민에 대한 보상으로 제정한 바로 ‘원호법’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유가 한국인의 피해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정부를 구속할 만한 유사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근거’에 따른 보상이 ‘한국인’으로서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전쟁 당시 ‘일본인’이었던

54)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292-293쪽; 「一般請求權徵用者關係等專門委員會會書」(文書番號 1224, 1962) 수록의 제4회 회합(1962.2.27), 11쪽.

55) 한국의 내부 자료에서는 동 140불을 5만 엔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환율은 전후의 고정 환율이던 1불 360엔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제6차 한일회담 계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97쪽.

56) 다만 제6차 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 내부에서는 당초 사망자의 금액도 2,000불을 예정하고 있었던 흔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위 자료집, 98쪽.

57) 한국 측 회의록에서는 “일본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 일본법에 의하여 계산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참조로 한 데 불과하다”라는 발언도 있으므로(『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293쪽), 동 산출이 원호법의 내용에 전면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가능성도 있으나 일본인에 대한 보상 금액에 비교해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임은 틀림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호’의 의미를 답습하게 됨은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다만 한국정부는 동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1인당 200불을 요구했다. 동 200불은 “징용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액”이었다.⁵⁸⁾ ‘원호법’에는 사망자,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인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실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요구는 바로 식민지 지배에 따른 ‘한국인’의 피해만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각 세부 항목들 가운데 일본인에 대한 기준을 넘어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논리를 포함한 것은 동 보상 요구가 유일했다.

5) 제5항: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금관계 기타

(1) 은금

은금에 관해 한국은 이하 표14와 같이 청구했다.⁵⁹⁾

표14-제6차 회담 시 제기된 은금 내역

종 류	인원수	요구액
연 금	35,120명	289,645,000.00엔
일시금	20,268명	16,549,970.00엔
합 계	55,388명	306,194,970.00엔

표14에 제시한 인원수 및 총액은 『배상조서』의 관련 항목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또 그 내역들은 1962년 2월 21일 “일반청구권 피징용자 관계 등 전문위원회 제2회회합”에서 한국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연금청구명세의 내용들과도 일치하므로⁶⁰⁾ 결국 동 요구는 배상요구 시부터 끝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차 회담에서의 청구 시 한국은 그 근거에 관해 1947년의 미 군정청이 조사한 것에

58)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292쪽.

59)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76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7쪽째.

60) 그 내용은 「一般請求權徵用者關係等專門委員會會合」(文書番號 1224, 1962) 수록의 제2회 회합(1962.2.21), 20쪽째. 또한 한국이 제6차 회담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연금 문제에 관해 정리하던 상세한 내용들도(『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101-125쪽) 『배상조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기초한 것임을 밝히면서 그 수치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른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⁶¹⁾ 따라서 비교적 상세한 것으로 보이던 『배상조서』의 내역들이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6차 회담에서 『배상조서』시의 내역을 그대로 제기한 사실은 그동안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한국정부가 동 항목에 관한 새로운 요구 내역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정확한 자료가 오히려 일본 측에 있다는 사정도 작용했겠지만 은급 역시 해당 대상자를 통한 자체 조사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자체조사의 흔적은 없다.

제6차 회담에서 한국이 미군정의 조사에 기초함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독자적 근거의 결여를 메우는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등에 관한 미흡함을 메워주는 것이 미국이라는 권위였다고 볼 수 있다.

은급에 관해서는 그 요구근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종전 전 한국인도 은급기금을 지출했다는 데에 요구근거를 삼아, 평균수명을 감안해 수급기간을 종전 후 20년으로 정했음을 밝히고 있다.⁶²⁾ 20년이라는 기간은 은급법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나 요구근거를 일제하의 은급제도에 둔 사실은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즉, 은급은 원래 한반도 통치를 위해 군림하던 총독부 관련 기관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서 근무한 '과실(果實)'이었다. 바로 한국은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 대가로 가능해진 일본정부로부터 '은(恩)'을 받아 '지급(給)'되는 그 과실을 받으려고 한 셈이다.

(2) 기탁재산

기탁재산에 관해 한국은 최종적으로 다음 표15와 같은 내역을 청구했다.⁶³⁾

61)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77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8쪽째.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배상조서』는 각 도, 제1차 소속관서(官署), 체신국 등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210쪽), 미군정 조사라는 기술은 없다. 그러나 수치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므로 『배상조서』의 조사 내용과 제6차 회담에서 나온 미군정 조사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상조서』에 기록된 조사는 관련 기관이 미군정하에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62)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76-178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8쪽째.

표15-제6차 회담에서 제시된 기탁재산 청구 내역

세부 항목	요구액(단위: 엔)
세관에 예탁된 통화액	10,510,200.58
조선은행권과 교환된 일본은행권	48,714,690.00
구 조선연맹에 기탁하고 현재 일본정부에게 압류되어 있는 것	54,550,000.00
합계	113,774,890.58

상술한 바와 같이 동 항목은 『배상조서』 시부터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상 제6차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위원회 토의에서 한국은 “세관에 예탁된 통화액” 10,510,200.58엔 요구를 1951년 9월 7일자 일본 대장성의 서한에 의거했음을 밝혔으나, 그 서한은 1949년 6월 30일자로 대장성이 정리한 귀환 한국인의 기탁재산 보관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다.⁶⁴⁾ 또한 “조선은행권과 교환된 일본은행권” 48,714,690.00엔도 동 대장성 정리 문서에서 1949년 2월 28일자의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청구 역시 일본 측 서한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1949년 시점에서 정리된 금액을 그대로 일본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셈이었다. 물론 대일 청구 시 일본 측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했음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산 기탁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 역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여 자금을 일괄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던 한국정부에게 일본 측 서한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이다.⁶⁵⁾

한편 일본정부가 압류 취득한 구 조선인연맹 보관분은 명확한 자료적 근거를 유한 것이 아니며, 동 청구액 산출의 유래는 불명하다.⁶⁶⁾ 일본

63)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62.3.6』, 179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10쪽째.

64) 1951년 9월 7일자의 일본 대장성의 서한 및 1949년 6월 30일자 대장성의 정리 문서는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34-35쪽째.

65) 한국정부는 내부적으로 보다 정확한 내역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일본 측 서한 이상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127-128쪽. 또한 본문에서 논했다시피 제1차 한일회담 개시를 앞두고 기탁재산에 관한 자체 조사 등의 흔적도 있었다.

66) 한국 내부에서는 현금, 상품, 기탁된 건수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므로 자체 조사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자료집, 128쪽.

측 역시 동 압류는 지방정부가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⁶⁷⁾ 금액 자체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제6차 회담은 1962년 이후 정치적 해결이라는 노선에 따라 세부 항목 토의가 사라졌으므로 동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일이 없었다고 판단된다.⁶⁸⁾

한편 제1차 회담 시 한국 내부에서 기탁재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제일한국인 손달원에 대한 기탁분도 구상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항목은 제6차 회담에서의 최종 요구 시 제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인 근거가 미약해도 구 조선인연맹 기탁분이 청구 대상으로 된 데 반해 손달원 기탁분이 제외된 것은, 전자가 일본정부에 의해 압류된 것에 반해 후자는 개인에 대한 기탁분이었다는 데에 기인함을 틀림없을 것이다. 즉, 개인 기탁분을 일본정부에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6) 제6항: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마지막으로 동 항목은 『배상조서』에서 원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 회사에 대한 한국인 가입자의 채권 문제였다. 그 내역은 예컨대 제4차 회담 자료에서 단지 “생명보험적립금”만 기록되는 등 표기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총액 467,336,159.18엔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제5차 회담까지 기본적으로 그 구성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판단된다.⁶⁹⁾

그러나 제6차 회담에서 한국은 최종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만 요구 범위를 한정하여 책임준비금 438,000,000엔을 청구했다.⁷⁰⁾ 그러나 『배상조서』 이래 생명보험 관련 내역은 책임준비금 400,000,000엔과 미경과 보험료 50,000,000엔, 합계 450,000,000엔이므로 6차 회담에 이르러 한국은 책임

67)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268쪽; 「一般請求權徵用者關係等專門委員會會合」(文書番號 1224, 1962), 수록의 제2회 회합(1962.2.21), 10쪽.

68) 1964년 10월에 정리된 일본 측 자료에서도 금액이 파악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 항목에 대하여서는 한일 양국 모두 최종 금액을 산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日韓會談における韓國の對日請求8項目に關する討議記録」(文書番號 1914, 1964), 152쪽.

69) 제5차 회담 시의 금액과도 차이는 있으나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가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0)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1962.3.6』, 180-181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11쪽째.

준비금을 0.38억 늘리는 한편 미경과 보험료를 제외시켜 총액을 1,200만 엔 줄인 조치를 취한 셈이었다. 그러나 금액 조정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주목되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요구가 왜 삭제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청구권'이라는 원칙에 서면 손해보험회사 관련 채권도 가입자의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같으므로 원래 제외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은 청구 시 금액이 크다는 것과 생명보험이 전쟁 중 저축 장려의 일환으로서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다는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⁷¹⁾ 즉, 확보해야 할 금액의 크기와 더불어 민간회사에 대한 요구라는 성격을 고려해 일본정부의 관여 정도를 최종적인 청구 대상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동 청구 세부 항목은 원래 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 '8항목 제5항'을 구성한 6개 세부 항목의 움직임을 상세히 고찰했다. 분석결과는 각 세부 항목의 움직임이 다양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청구권 교섭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8항목 제5항'의 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중요한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항목 제5항'에 관한 '청구권' 교섭은 기본적으로 '배상'요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것은 '청구권' 교섭으로 전환된 제2차 회담 시의 조희 내용, 그리고 제5차 회담 시 준비된 내역들의 구성이 『배상조서』를 기반으로 한 점, 또한 제6차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6개 항목이 그대로 청구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배상'에서 '청구권'으로의 명목 변화가 교섭의 세부 항목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일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교섭과정에서 생긴 변화에는 일반화되는 경향이 없다. 사실 제6차 회담 시의 최종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제2항 일계통화 및 제6항

71)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차, 1951.10.27-62.3.6』, 181쪽;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文書番號 1218, 1961), 12쪽째.

보험 관련 청구의 범위가 축소된 반면 제1항 일본유가증권, 제4항 피징용자 피해보상은 그 범위와 대상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5항 은급에는 일절 변화가 없다. 이들 사실은 요구 내역의 변화가 예컨대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 등 일반화된 논리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료 준비 상황, 법적 근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 등, 개별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에 불과했음을 가리킨다.

셋째, 제6차 회담에서의 최종 요구 제기 시 한국은 한일회담 개시 이전에 이미 확정된 조사 내용 및 미국, 일본 측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그것은 제1항 유가증권을 빼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미국 및 일본 당국이 작성한 자료에 의거한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제6항목 역시 비록 금액에 차이는 생겼으나 생명보험이 『배상조서』에서 명확히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일회담 개시 후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가운데 개최된 제6차 회담의 교섭 내용이 회담 개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어쨌든 '8항목 제5항'에 관한 과거 처리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은 아무런 발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8항목 제5항'은 피징용자 관련 항목 등 '청구권' 개념을 넘은 '전쟁 피해'를 포함한 것이었다. 실제 동 항목은 『배상조서』에서도 제2부 확정채권 부분만이 아니라 제3부의 전쟁 피해에 유래했었다. 그러나 한국이 동 청구를 하는 데 의거한 것은 생존자를 제외하고 결국 '원호법'이었다. 이 사실은 동 요구가 일본과의 교전관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노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요구액 역시 외국인에 대한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격은 은급에 관한 청구에서도 나타났다. 청구권 교섭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 교섭이 아닌 식민지 지배 협력에 대한 '보수 획득' 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배상조서』 이래 유일하게 '청구권'이라는 틀을 넘은 동 세부 항목 역시 그 본질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었다.

참 고 문 헌

- 대한민국 정부, 『對日賠償要求調書 第1部: 現物返還要求』, 1949.
- _____, 『對日賠償要求調書(續): 第2部·第3部·第4部』, 1949.
- _____, 『對日賠償要求調書』, 1954.
- _____, 『韓日會談의 諸問題』, 1960.
-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2.20-4.1』.
-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 관계 자료, 1952』.
-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차-3차, 1953.5.11-6.15』.
- 『제4차 한일회담(1958.4.15-1960.4.19), 청구권 관계 자료, 1958』.
- 『제5차 한일예비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60-1961』.
-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관계 종합자료집, 1961』.
-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11차, 1951.10.27-1962.3.6』.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 2권, (V.2 최덕신-고사카)小坂 외상회담, 1962.3.12-17』.
-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1963』.
- 『日韓會談第4回請求權問題委員會議事錄』, 文書番號 1180, 1952.
- 『日韓會談重要資料集』, 文書番號 525, 1960.
- 『第5次日韓全面會談予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回會合』, 文書番號 83, 1960.
- 『第5次日韓全面會談予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2回會合』, 文書番號 94, 1961.
- 『第5次日韓全面會談予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3回會合』, 文書番號 95, 1961.
-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 文書番號 1217, 1961.
-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第8回會合』, 文書番號 1218, 1961.
- 『一般請求權徵用者關係等專門委員會會合』, 文書番號 1224, 1962.
- 『日韓會談における韓國の對日請求8項目に關する討議記録』, 文書番號 1914, 1964.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 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 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1호, 2008, 209-241쪽.
- _____,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09.
- 정병욱,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청산과정과 한일관계」. 『사학연구』 제95호, 2009, 135-176쪽.
- 高崎宗司, 『檢證 日韓會談』. 岩波書店, 1996.
- 吉澤文壽, 『戰後日韓關係: 國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 クレイン, 2005.
- 太田修, 『日韓交渉: 請求權の研究』. クレイン, 2003.

국 문 요 약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 관한 주된 연구에서도 대일 8항목 요구 중 세부 항목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그러나 청구권 교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구 대상이 된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한 치밀한 해부가 불가결하다.

이 글은 한일 양국의 공식문서에 파고들어 우선 대일 8항목 요구 중의 제5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구권 토의는 1951년 가을 예비회담부터 시작되었으나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청구권'으로서 항목 및 금액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제6차 회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6차 회담 토의 시 일본에 제기된 세부 항목 및 금액들이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청구권 요구라고 간주하고 그에 이르는 항목과 금액의 흐름을 고찰 범위로 한다.

이 글은 청구권으로서 일본에 제기된 제5항의 세부 항목들이 배상요구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에 따라 세부 항목들이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다는 것, 청구권의 정식 요구 시 한국이 의거한 것은 한일회담 개시 이전에 확정된 미국과 일본의 문서였다는 것, 그리고 피징용자의 보상 문제는 일본국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실증하고 청구권 교섭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투고일 2010. 12. 17.

수정일 2011. 1. 28.

게재 확정일 2011. 2. 10.

주제어(keyword) 한일회담(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청구권 교섭(the negotiations on claims), 대일 8항목 요구(claims of the eight items against Japan), 제5항(the fifth item), 세부 항목의 변천(the changes of the sub-items)